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6-31호
2026. 6. 26.(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고 시(2)

- 선비마을로(동부여성가족원 앞) 보행로 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고시 제2026-51호) 1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고시 제2026-53호) 3

공 고(1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728호) 5
-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729호) 14
- 2026.1.1.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 · 공시(공고 제2026-731호) 2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732호) 22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6-733호) 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735호) 31
-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공고 제2026-736호) 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738호) ... 4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6-741호) 52
- 「신탄진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상생상가」 공실(103호) 입주자 모집 공고(공고 제2026-749호) · 92

공 략									
-----	--	--	--	--	--	--	--	--	--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미디어홍보과(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7)

선비마을로(동부여성가족원 앞) 보행로 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보행로를 조성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 사항 해소 및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대덕구 법동 440-1번지 일원에서 추진하는 「선비마을로(동부여성가족원 앞) 보행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26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440-1번지 일원 / 선비마을로(동부여성가족원 앞)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소로1-법동5)
- 사업의 명칭: 선비마을로(동부여성가족원 앞) 보행로 개설사업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의 면적: 164.2m² (보행로 공사구간에 한함)
- 사업의 규모: 폭원 B=2.5m, 연장 L=59m (보행로 공사구간에 한함)

라. 사업시행자

- 성 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건설과)
-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2026. 12. 31.

바. 열람장소: 대덕구청 건설과 (☎ 042-608-5212)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번 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의 권리의 종류
계				3,195.4	164.2					
1	법동	440-6	공	331.7	26.5	대전광역시	대전 서구 둔산로 100	-	-	-
2	법동	440-1	차	1,058.3	86.3	대전광역시	대전 서구 둔산로 100	-	-	-
3	법동	440-2	잡	1,805.4	51.4	대전광역시	대전 서구 둔산로 100	-	-	-

※ 상기 토지상 지장물건 일체 포함

- 편입면적은 분할측량 및 등록전환 후 조정될 수 있으며, 편입토지 내 지장물 포함임. (지장물건은 조정될 수 있음)

아. 관계도서: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끝.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대덕구 신탄진동 220번지 일원 대전보훈병원 부지내 “대전보훈병원 보훈가족
고객주차장 증축공사”를 위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연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86조·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다 음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22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 사업의 명칭 : 대전보훈병원 보훈가족 고객주차장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부지면적 : 43,556㎡ → 46,828㎡
- 건축면적 및 연면적

구 분	기 존	증 축	합 계	비 고
건축면적(㎡)	15,973.95㎡	87.61㎡	16,061.56㎡	
연 면 적(㎡)	50,249.48㎡	31.74㎡	50,281.22㎡	

- 변경사항: 대지내 북측 주차장 연결도로 폭 변경(기신고: 3~6m, 변경: 4~7m)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4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6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토지소유자	
	구	동	지번			성명	주소
계			5필지		46,828		
1	대덕	신탄진	220	대	39,80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강원 원주시 혁신로 40
2	대덕	신탄진	220-1	주	1,13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강원 원주시 혁신로 40
3	대덕	신탄진	2-4	대	2,56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강원 원주시 혁신로 40
4	대덕	신탄진	2-5	임	3,27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강원 원주시 혁신로 40
5	대덕	신탄진	2-8	대	4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강원 원주시 혁신로 40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게재생략(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덕구청 주택경관과에 비치).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6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권고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여 예산 누수를 방지하고, 기타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송사무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소송비용 회수 예외 사유를 구체화함(안 제16조제3항).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실
(전화: 042-608-6062, FAX: 042-608-3811, E-mail: kikim@korea.kr)
-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실 담당자 김귀인(전화: 042-608-60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 및 소송비용 추심의 사무를 포기하거나 유보할”을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 및 소송비용의 회수를 하지 않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6.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승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 및 소송비용 추심의 사무를 포기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u> <u><후단 신설></u> 1. 상대방에게 <u>자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u> 2. (생략) 3. <u>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추심할 금액이 그 신청에 드는 비용보다 적어 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u> 4. (생략)	제16조(승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 및 소송비용의 회수를 하지 않을 -----.</u> <u>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u> 1. <u>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u> 2. (현행과 같음) 3. <u>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u>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삭 제>

6.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관계법령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 (생략)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 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① 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행정청의 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 등) ①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확정사건의 처리) ①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국가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소관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패소판결의 확정으로 승소자에게 지급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국가승소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와 관련된 징수유예 신청의 근거 법령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제1항).

나.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중 징수유예 신청에 관한 근거 법령을 정비함(안 제5조제3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참조 :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감사실(전화 : 042-608-6032, 팩스 : 042-608-3812, 이메일 : tax82@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감사실 담당자 이충은(전화 : 042-608-60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영 제51조의2제1항제6호”를 “영 제51조의2제1항제7호”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 3”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를 “영 제51조의2제2항제5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서 “조 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2. (생 략)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 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 유예의 신청에 관한 사항 4. (생 략)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51조의2제1항제7호----- ----- -----. 1. ~ 2. (현행과 같음)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3 ----- ----- 4. (현행과 같음)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5호 ---- ----- -----. 1. ~ 3.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채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및 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에서의 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 2의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심사하는 경우 및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해 의결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의 참여 및 의견 제출
5.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지방세징수법

- 제25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① 납세자는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2026.1.1.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 ·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2026.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중 조정된 주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 공시합니다.

2026년 6월 26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대상주택: 대덕구 중리동 233-27번지(한밭대로 1114번길 33-7)
- 공시장소: 대덕구 공보, 대덕구 홈페이지
- 내 용: 2026. 4. 30일자로 결정·공시한 2026.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중 이의신청으로 조정된 개별주택가격

(단위:원)

소재지	당초 결정주택가격	조정 결정주택가격	검증결과
대덕구 중리동 233-27번지(한밭대로 1114번길 33-7)	359,000,000	382,000,000	상향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6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안전 발생 빈도가 낮은 지역치안협의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협의회의 운영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이에 맞추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역치안협의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라 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나.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정비함(안 제6조).

다. 협의회 구성 및 해산 규정을 신설하고 회의 소집 규정을 정비함
(안 제8조).

라. 현재 운영 실적이 없는 실무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자치행정과
(전화: 042-608-6143, FAX: 042-608-3822, E-mail: kyyoung@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행정과 담당자 김윤영(전화: 042-608-61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등) 협의회 위원인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u><삭 제></u>
<u>제6조(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u> <u>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u>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u> <u>3. 본인이 원하는 경우</u> <u>4.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u>제6조(위원의 해촉 등) 협의회 위원</u>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u>제8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u> <u>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u>	<u>제8조(회의) ①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u> <u>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u>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생략)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삭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6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가.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2026. 6. 26. ~ 7. 10. (14일간)

4. 공고대상: 별첨

5.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자원농생명과(☎042-608-6834)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서의 경우, 2026. 7. 28.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 부과금액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위 기간이 도래하면 사전통지서, 부과통지서, 독촉고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 의 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농생명과(☎042-608-6834)

[별첨]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감경액)	반송사유
임*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256번길 19-*	담배꽂초 불법투기	50,000 (40,000)	폐문부재
박*호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416번길 1*, 40*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50,000 (40,000)	폐문부재
김*	대전광역시 중구 충무로71번길 4*	담배꽂초 불법투기	50,000 (40,000)	폐문부재
오*영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71, 10*동 120*호	담배꽂초 불법투기	50,000 (40,000)	폐문부재
정*용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동중리2길 1*, 20*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50,000 (40,000)	수취인불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73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6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지급 대상자의 성적기준을 완화하여 장학금 수혜 기회를 확대하고, 조례의 용어와 띄어쓰기 등 미비한 사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지급 대상자의 성적 기준 완화 및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 및 부칙 제2조).

1) 중학생: 직전 학기 평균 80점 이상 → 70점 이상

2) 고등학생: 직전 학기 평균 4등급 이상 → 3등급 이상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성적체계 변경(5등급제 도입)을 반영하고, 종전의 성적체계가 적용되는 학생은 종전 규정을 적용함.

나. 기금 관리 공무원의 직위를 일반화함(안 제9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안 제명, 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7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생활보장과
(전화: 042-608-6743, FAX: 042-608-3838, E-mail: kjh12058@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보장과 담당자 김진희(전화: 042-608-67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저소득주민 자녀”를 “저소득주민자녀”로, “관리”를 “관리 및”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존의”를 “기존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수입금”을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3조제2항 중 “목적외”를 “목적 외”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기금의운용관리)”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세입·세출예산외”를 “세입·세출예산 외”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운용관리”를 “관리·운용”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기금지급대상자)”를 “(기금의 지급 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금 지급대상은 가용재원 범위 안”을 “기금의 지급 대상은 가용재원 범위 안”으로, “80점 이상인 학생으로”를 “7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하며”로, ““4등급”이상”을 “3등급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급대상자”를 “지급 대상자”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발된자가 다음 각호의 1”을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결여한자”를 “결여한 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퇴학·정학·휴학처분등”을 “퇴학·정학·휴학처분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향상등”을 “향상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사회윤리적 문제사유”를 “사회 윤리적 문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 지급”을 “따라 지급이”로, “새로이 지급대상자”를 “새로 지급 대상자”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용·관리를”을 “관리·운용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

금출납원 :”을 “기금출납원:”으로, “과장”을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로, “비치하고”를 “비치하고,”로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장

제10조제1항 중 “출납폐쇄후 80일 이내”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개항”을 “개황(概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손익계산서등”을 “손익계산서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출계산서등”을 “지출계산서 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성적체계가 적용되는 고등학생의 장학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대전광역시 대덕구</u> <u>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u> <u>운용 조례</u>	<u>대전광역시 대덕구</u> <u>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u> <u>운용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덕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가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u>저소득주민 자녀</u>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u>관리</u>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저소득주민자녀</u> ----- ----- ----- <u>관리</u> 및 ----- ----- --.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u>각호</u> 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u>기존의</u> 조성된 재원 2. (생략) 3. 기타 <u>수입금</u>	제2조(기금의 조성) ----- ----- ----- -- <u>각 호</u> -----. 1. <u>기존에</u> ----- 2. (현행과 같음) 3. --- <u>수입금</u>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대덕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	제3조(기금의 용도) ① ----- -----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생 략)
2.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선발한다.

제7조(기금의 지급정지) ① 기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제6조제1항의 요건을 결여한 자
2. 퇴학·정학·휴학처분등을 받았을 경우
3. 4. 삭 제
5. 경제력의 향상등으로 기금의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각종 폭력 가해에 연루되는 등 사회윤리적 문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정지된 기금은 새로이 지급대상자를 선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생

---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

----- 지급 대상자-----
--.

제7조(기금의 지급정지) ① ----
-----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결여한 자
2. 퇴학·정학·휴학처분 등-----

5. ----- 향상 등-----

--
6. -----
-- 사회 윤리적 문제-----

② ----- 따라 지급이
----- 새로 지급 대상자
-----.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현행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
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략)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3.·4. (생략)

제9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
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생활보장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자가 아닌 6급 직원 중 과장
이 지정한 자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
야 한다.

제10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
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과 같음)

② -----
----- 각 호 -----
-----.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연도 -----

3.·4. (현행과 같음)

제9조(회계공무원) ① -----
----- 관리·운용 -----
-----.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
서장

2. 기금출납원: -----
----- 담당부
서장-----

② -----
-----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
여 ----- 비치하고, -----
-----.

제10조(기금의 결산) ① -----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u>각호</u>와 같다. 1. 기금결산의 <u>개항</u>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u>손익계산서</u>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u>지출계산서</u>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② ----- ----- -- <u>각 호</u>-----. 1. ----- <u>개황(概況)</u> ----- ----- 2. ----- <u>손익계산서</u> 등 ----- 3. ----- <u>지출계산서</u> 등 ----- ----- -----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고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26년 6월 26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정정 결정지가 내역

- 대 상 토 지: 1필지
- 결정·공시일: 2026년 6월 26일
- 가격 기준일: 2026년 1월 1일 기준
- 정 정 내 역

소재지	정정 전 가격(원/m ²)	정정 후 가격(원/m ²)	비고
미호동 416-2	68,000	23,100	2026. 1. 1. 기준

-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26. 6. 26. ~ 7. 25.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덕구청 토지정보과(☎042-608-532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6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의 조성 재원 및 용도에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금 관리 공무원의 직위를 일반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사건립기금의 조성 재원에 지방채 발행 수입금을 신설함(안 제3조).

나. 청사건립기금의 용도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신설(안 제5조).

다. 조문 내 띄어쓰기 등 문구를 정비함(안 제3조 및 안 제6조).

라. 기금운용관의 직위를 일반화하여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신청사건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신청사건립과

(전화: 042-608-5254, FAX: 042-608-3859, E-mail: click0912@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청사건립과 담당자 최선미(전화: 042-608-525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대덕구유재산”을 “대덕구 구유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방채 발행 수입금

제5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

제6조제2항 중 “저축성상품”을 “저축성 상품”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신청사건립과장”을 “기금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4. (생 략) 5. 대전광역시 <u>대덕구유재산</u> 의 매각대금 <u><신 설></u>	제3조(기금의 조성) ----- -----. 1. ~ 4. (현행과 같음) 5. ----- <u>대덕구 구유재산</u> - ----- 6. <u>지방채 발행 수입금</u>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u><신 설></u>	제5조(기금의 용도) ----- -----. 1. · 2. (현행과 같음) 3. <u>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상환</u>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생 략) ② 기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u>저축성상 품</u> 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저축성 상 품</u>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 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 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u>신청사건립과장</u>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 ----- -----. 1. ----- <u>기금업무 담당부 서장</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6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전문경력관 채용 시 임용권자의 재량 규정을 정비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 시험위원 구성에 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제1항).
- 나. 전문경력관 신규 채용 시 임용권자가 가산 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함(안 제13조의3제2항).

- 다.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경력요건 완화 대상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 대한 세부기준을 신설함(안 제14조제12항).
- 라. 사회복지·의료기술 직류의 가산 대상 자격증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안 별표 7의4).
- 마.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격증 통합 및 명칭을 현행화함(안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7의4).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운영지원과

(전화: 042-608-6523, FAX: 042-608-3821, E-mail: phj890105@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운영지원과 담당자(전화: 042-608-65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3조의3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⑫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4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중 사회복지 직렬란 및 의료기술 직렬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데 이 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선박기관정비, 영사, 승강기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기계운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 능 사 : 선체설계, 선체건조, 선박기관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커스텀레이아웃, 품질경영 기 능 사 : 자동화설비, 전자기기, 임베디드, 전자카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안전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업 ,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안전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업 ,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안전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항 공	일반항공	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 사 : 항공 산업기사 : 항공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수도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 업 기 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지 적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산 업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 업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 설 계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 업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 , 웹디자인개발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 업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통신기술	기 능 장 : 전자 , 통신설비
	전송기술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 업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 술	기 능 사 : 전자기기, 정보통신 ,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조 리	조 리	기 능 장 : 조리 산 업 기 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기 능 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위 생	사 역	기 능 사 :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 업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 능 사 : 전기, 설비보전 , 조경

2.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 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 육 행 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데 이 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류						
공 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 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 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 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방 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의료기술	의료기술	이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위생사(12) 직업치료사(12) 보건의료정보관리사(12) 안경사(12) 방사선동위원소측정사(특수) 방사선조사(5) 임상심리사1급(7)	이상병리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위생사(8) 직업치료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안경사(8) 방사선동위원소측정사(일반)(3) 방사선조사(1급)(3) 임상심리사1급(3)	이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위생사(5) 직업치료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안경사(5) 방사선동위원소측정사(일반) 방사선조사(1급)(3) 임상심리사2급(3)	이상병리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위생사(2) 직업치료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2) 안경사(2) 임상심리사2급	이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직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	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
	수 질					
	대 기					
	폐 기 물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기(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운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기(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운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기(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운장정비사(3) 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기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운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운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운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운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운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속 기	속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3급(2)	한글속기 123급
위 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
- (삭제)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제3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공업연구	기 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반도체설계)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기사(섬유, 의류)
	화 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안전, 화학분석)
	화 학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 리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농업연구	작 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약사
	농업환경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약사, 위생사(5)
	작물보호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곤충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1999. 3. 27. 이전 취득한 것을 말함.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농업연구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안전 ,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농 공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퀘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계설계)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영양사(5), 위생사(5)
녹지연구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업)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경제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보건연구	의 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 학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환경연구	환 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방재안전 연구	안전관리		기사(방재)
	재난관리		기사(방재)

비 고 :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지도직 공무원

직렬 \ 계급	직류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안전 ,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농업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촌지도	어	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비 고 :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 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데 이 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톨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 시스템,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산업기사(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 업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응용지집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안전)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종자, 식품)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업 ,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안전 ,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어 로				
	해양교통시설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보 건	방 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안전)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직렬 \ 계급 직류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 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 급감독자	방사성 동위 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 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 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 지·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 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 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 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 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 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 리, 자연생태복원)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 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 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 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 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 음진동)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 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 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 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 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 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 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 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방재)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 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수도토목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 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 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계	교통, 지질및지반)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술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컴퓨터시스템, 무선설비,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 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리	조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 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직렬 \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 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설비 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 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설비보전, 조경)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3조의3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 이 터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 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 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업기계	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선박기관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톨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조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 능 사 : 선체설계, 선체건조, 선박기관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 능 사 : 자동화설비, 전자기기, 임베디드, 전자카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원자로 조종감독자, 핵연 료물질취급감독 자, 방사성동위원 소취급자(특수, 일 반), 방사선취급감 독자, 원자로조종 사, 핵연료물질취 급자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 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 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 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 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산물품질관리 사
	식물검역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 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안전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의사,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 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품안전 ,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사
	산림보호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사
	산림이용	기술사 : 산림 기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능사 : 조경, 산림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 해양,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능사 : 잠수	
	일반수산	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업 ,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안전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수산물품질관리사
	어 로	기술사 : 해양, 어업 ,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설	기술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 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 전기, 전자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안전 ,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기능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 율 적용: 의사, 한 의사, 치과의사, 수 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 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 상병리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방사선 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 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 사, 영양사, 응급구 조사2급, 보건교육 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 율 적용: 보건교육사 3급
	방 역		기사자격증 가산비 율 적용: 의사, 수 의사, 약사, 응급구 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 상병리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간호 사, 위생사, 응급구 조사 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안전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자격증 가 산비율 적용: 영양 사, 위생사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환 경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 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 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산업기사 :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수도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사
	측 지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 설 계		
	디 자 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사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 웹디자인개발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신사	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 전자 , 통신설비 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통신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기능사 : 전자기기, 정보통신 ,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전자통신기술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설비보전 , 조경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 · 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계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농촌지도	농업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공업연구	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자	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 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금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화 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 화학분석	
	화 학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경영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 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농업연구	물 리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산업기사 :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농식품 개발	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 : 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 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	
	작 물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원 예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	원 예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정,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정,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산업곤충	기 사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잡 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 술 사 : 섬유,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 사 : 섬유,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섬유, 패션디자인,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생활		
농촌지도	농업경영		
농촌지도	농촌사회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정,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자동화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안전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지도	축 산	산업기사 : 축산, 식품	
농지연구	임 업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조 경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촌지도	임 업		
수의연구	수 의	기 술 사 : 축산 기 사 :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농촌지도	가축위생	산업기사 : 축산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안전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산자원		
어촌지도	어 촌		
해양수산연구	수산양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공학	기 술 사 : 해양, 어업,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수산가공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식품	
보건연구	의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	환 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시설연구	토 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설연구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연구	안전 관리 재난 관리	기 사 : 방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하여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③ 삭 제

④ (생 략)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 ⑪ (생 략)

<신 설>

-----.

-----.
-----. <단서 삭제>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시행규칙) 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과 의회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규칙을 정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관계 규정과 가급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중증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5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규칙으로 정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신탄진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상생상가」 공실(103호) 입주자 모집 공고

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 및 창업자의 활동 지원을 위해 「신탄진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상생상가」 공실(103호)에 대한 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년 6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모집 개요

가. 시설명 : 신탄진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상생상가

나.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884

다. 대상 : 상생상가 총 1호(임대상가) / 103호

라. 입주기간 : 입주일로부터 2년 /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2년 단위 갱신(최대10년)

※ 사용료는 1년 단위 재산정, 갱신조건은 최초 계약 시 자격 유지

마.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바. 추진일정

모집 공고	입주신청 접수	선정심사 및 결과통보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및 승인	입주
홈페이지 공고	우편/이메일/방문 접수	서류, 선정위원회 심사 및 선정결과 통보	사용허가 신청 및 승인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
'26.6.26.~'26.7.20.	'26.7.6.~'26.7.20.	'26.7.~8.	'26.8월 중	'26.9월 중

※ 서류 접수 및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음.

2. 입주 자격

가. 입주자격 : 모집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의 대전에 거주 중인 개인 또는 대전 소재(사업장 주소지가 대전)의 법인

* 중복신청 불가, 사용허가 신청자(입주 선정자)가 직접 운영(전대 불가)

나. 우대 사항 / 입주자 선정 시 가점 부여

- 19세 이상의 대덕구에 거주 중인 개인 또는 대덕구 소재의 법인 / 소상공인
- 대덕구 소재의 사회적기업
- 경력 단절 여성, 청년(만19~39세), 시니어(만65세 이상) 구성원을 1인 이상 포함한 개인(법인)
- 신탄진 도시재생사업 「창업인 교육컨설팅」 수료자

※ 법인의 경우 소속인원 중 1인이더라도 컨설팅 수료 시 가점 인정

- 신탄진 지역 내 상가 내몰림 피해(임대료 인상 등)가 확인된 개인(법인)

다. 입주 제한

- 프랜차이즈, 금융·부동산,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투기성 업종 등
- 그 밖에 지역 공동체 및 상권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

3. 신청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7. 6.(월) ~ 7. 20.(월)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18시)에 한함, 접수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나. 접수방법 : 우편(등기), 이메일(sumin8294@korea.kr), 방문접수

※ 접수처 : 대덕구청 도시계획과 (대전로1033번길 20 대덕구청, 별관 4층)

다. 선정방법

- 심사방법 : 사전심사(구비서류 등) 및 선정위원회 평가·선정
- 심사내용 및 배점

구분	심사 내용	배점	비고
사전심사	▫ 구비서류 제출 여부, 기본사항 등 확인 (상기 우대사항 해당 시 가점 부여)	25	항목별 해당 시 최대 20점 가점 부여
선정위원회 심사	▫ 1차 심사 적격자에 대한 5개 항목 평가	100	
총점		120	

• 선정위원회 심사 배점표(5개 항목)

연번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 내용
1	사업성	20	▣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 ▣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구체성
2	전문성	20	▣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여부 및 경력 ▣ 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3	시장성	20	▣ 사업의 파급효과, 개발능력 ▣ 지속적인 운영 및 성장 가능성
4	사회가치 창출	20	▣ 지역사회 공헌 및 기여도 (지역공헌사업 실적, 표창 수여 실적 등) ▣ 고용창출 가능성
5	기타	20	▣ 입주신청 사유의 적정성 ▣ 입주 후 지역활동 참여 등 활동계획의 적정성
총점		100	

※ 선정위원회 심사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미선정 / (예시) 사전심사 점수 10점 + 선정위원회 심사 점수 56점 = 총점 66점 → ‘미선정’

- 선정방법 : 사전심사, 선정위원회 심사 합계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최종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선정위원회 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선정결과 : 개별 통보 / 선정 후 입주계약 체결

라. 평가항목 : 사업성, 전문성, 시장성, 사회가치 창출, 기타(신청사유, 입주 후 활동계획) 등

마. 제출서류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1부 【붙임1】 ▶ 신청인(단체)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이력 전체 표시, 3개월 이내 발급) 1부 ▶ 입주자(법인) 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붙임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붙임3】 ▶ 상생상가 사용 준수사항 확인서 1부 【붙임4】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해당시) 근로계약, 4대보험 가입 등 구성원 확인 서류 ▶ (해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시) 신청자(법인) 주요활동 증빙자료 ▶ (가점항목) 상가내몰림 피해 현황 관련 확인 서류 ▶ (가점항목) 대덕구 소재 법인, 사회적기업 등 우대사항 관련 증빙 자료
------	--

4. 입주 조건

가.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입주 원칙

나. 임대시설에 대한 사용 책임 의무 준수 (붙임 4 참고)

다. 입주비용 개별 부담 / 1년간 사용료 일시 납부(관리비 별도)

※ 1년간 사용료(부가세 포함)는 우리 구에 일시 납부, 전기료 등 공용관리비는 매월 시설물 운영 주체(관리사무소)에 납부(고지서)

건축물 용도	호수	전용면적 (㎡/평)	1년간 사용료(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상생상가 103호	36.29㎡ / 11평	6,763,350

라. 내부 인테리어 등 영업 관련 시설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모든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 안전관련 의무사항 미이행 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됨.

** 건축물의 구조를 바꾸는 공사는 불가하며, 행정재산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범위 내에만 가능

마. 상생상가를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할 사항은 선정자 책임하에 득하여야 함.

바. 입주 해지 사유

- 승인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계약 체결하지 않은 경우
-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 받은 경우
- 사업자(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대전시 대덕구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5.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이 불가함.

나. 접수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무효 처리됨.

다. 입주가 선정된 개인(법인)은 입주공간을 타인에게 양도 불가

- 라. 입주공간의 사용률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퇴실 조치 될 수도 있음.
- 마. 신청 접수현황, 심사내용 및 접수 등은 공개하지 않음.
- 바. 입주선정 포기 이력이 있는 개인(법인)이 재신청한 경우 선정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호실 후순위 배정 또는 입주가 미선정 될 수 있음.
- 사. 문의처 : 대덕구청 도시계획과 도시재생팀 (☎042-608-5954)

- 붙임
- 1. 입주신청서
 - 2. 입주자(법인) 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4. 상생상가 사용 준수사항 확인서
 - 5.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입주신청서

신탄진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상생상가
입주(사용허가) 신청서

성명 (대표자)		상호	
생년월일 (법인번호)		입주시설	신탄진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상생상가
신청업종 (분야)		신청공간	
연락처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신탄진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상생상가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입주
희망하며 이에 입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전체 표시, 3개월 이내 발급) 1부
3. 입주자(법인) 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5. 상생상가 사용 준수사항 확인서 1부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7. (해당시)근로계약, 4대보험 가입 등 구성원 확인 서류
8. (해당시)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9. (해당시)입주자(법인) 주요활동 증빙자료
10. (해당시)상가내몰림 피해 현황 관련 확인 서류
11. (가점항목)대덕구 소재 법인, 사회적기업 등 우대사항 관련 증빙자료

2026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대덕구청장 귀하

입주자(법인) 소개서

1. 입주자(법인)명

2. 설립 취지 및 목적

3. 주요연혁 ※ 최근 순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4. 조직도

5. 구성원현황

연번	구분	성명	담당역할	상근 여부
1	대표			상근
2	직원			비근
3	직원			비상근
4				

사업계획서

1. 신청 동기(상가내몰림 현황 등)

2. 사업 설명(사업 추진 가능성, 그간 지역사회 공헌도 등)

3. 전문성(자격 보유여부, 경력 등)

4. 시장성(주요 수요처, 목표시장, 성장가능성 등)

5. 입주 후 지역사회 기여 계획 및 연계방안(고용창출, 홍보계획 등)

※ 각각의 항목들을 참조하여 사업모델에 맞게 자유롭게 기재

허위자료 제출 시 제재사항

이 자료는 입주업체 선정심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신탄진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상생상가 입주를 신청하는 개인(법인) 대표자의 개인 식별정보(생년월일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탄진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상생상가 신청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실적·성과 등 입주자 평가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 개별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일자리 사업 등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신탄진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상생상가입주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생년월일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대표)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번호)	

상생상가 임대시설 사용 준수사항

1. 상가 운영종료 후에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2.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물 보안정책 및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입주자가 시설 기물 또는 제공한 물품을 분실, 파손 및 붕괴 시 즉시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한다.
4. 관계법령·기준에 저촉되는 물건의 반입, 제조 및 판매행위를 금한다.
5. 상가 내에서 취사, 소각, 음주, 흡연, 도박, 고성방가, 애완동물 사육 및 주거용도 집기 등의 설치행위를 금한다.
6. 임대공간 이외의 복도 및 통로를 잠식하여 물품을 적재하거나 진열함으로써 이용자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7. 구청장의 승인 없이 내·외부에 광고물, 간판을 부착하는 행위 및 개별 냉·난방용 기구의 반입·사용을 금한다.
8. 최종 퇴실 시 냉·난방장치 방치로 에너지 절약시책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9. 월 2회 전체공간에 대해 입주자 공동 환경정비를 실시한다.
10. 그 밖의 공익과 시설 운영 및 유지를 위해 구청장의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성명(대표)

(인)

대덕구청장 귀하

붙임 5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항목	심사 세부내용	배 점	평 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사업성	-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 -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구체성	20	20	16	12	8
전문성	- 해당 분야 자격증 보유여부 및 경력 - 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20	20	16	12	8
시장성	- 사업의 파급효과, 개발능력 - 지속적인 운영 및 성장 가능성	20	20	16	12	8
사회가치 창출	- 지역사회 공헌 및 기여도 (사업실적, 표창 수여 등) - 고용창출 가능성	20	20	16	12	8
기타	- 입주신청 사유의 적정성 - 입주 후 지역활동 참여 등 활동계획의 적정성	20	20	16	12	8
가점	가점 세부내용	배 점	평가			
	여		부			
	- 19세 이상의 대덕구에 거주 중인 개인 또는 대덕구 소재의 법인 / 소상공인	4	4	0		
	- 대덕구 소재의 사회적기업	4	4	0		
	- 경력 단절 여성, 청년(만19~39세), 시니어 (만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해당	4	4	0		
	- 신탄진 도시재생사업 「창업인 교육 컨설팅」 수료자	4	4	0		
	- 신탄진 지역 내 상가 내몰림 피해 여부	4	직전/현재 임대료 인상률			
			4% 이상	2% 이상 4% 미만	그 외	
4			2	0		

※ 심사기준에 따른 증빙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